

「인터넷특허 심사기관 특허청 심사4국」

전북대학교 이용석*

ETRI 등 70여개의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대전의 연구단지에는 국내 첨단 과학기술의 메카로서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 비유되고 있다. '98.8 10개 정부기관과 함께 특허청이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주하고 2000년 3월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주함에 따라 대전은 이제 명실공히 특허타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허청은 매년 10만건 이상 출원되는 특허출원을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정부기관으로 약 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전체 출원의 47%를 차지하는 컴퓨터, 통신 등 전기전자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심사4국으로 약 180명의 심사관이 정말 새롭고 우수한 기술만을 골라 특허를 내주느라 밤낮으로 출원서와 씨름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기술수준과 난이도가 높아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수준도 매우 높다. 180명의 심사관 중 약 140명이 박사 또는 기술고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인데 중앙부처 가운데 최고 수준의 맨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4국(국장 정용철)을 찾아 대전 둔산동에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를 방문하였다. 최근 심사4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관련 특허출원과 민원문의 때문에 매우 바쁘다. 인터넷특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한다.

인터넷특허란?

인터넷특허란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부여된 특허권을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관련 기술은 크게 컴퓨터기기,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분야와 영업방법, 통신방법 등 소프트웨어적인 응용분야로 구분되는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분야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종래기술에 비해 신규하고 진보한 면이 있으면 당해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영업방법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은 발명으로서의 성립성이 종종 문제가 되는데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특허를 받으려면 영업방법과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 등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기술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용철 국장은 인터넷특허 가운데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발명과 관련해서 특허는 영업방법 자체에만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방법과 결합된 기술적 사항 일체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를 획득하면 그와 똑같은 영업방법은 그 특허권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특허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영업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방법이 다르면 얼마든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기본기술을 먼저 개발하여 특허를 받음으로써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후발기업의 경우는 우회기술, 개량특허를 확보함으로써 특허분쟁을 예

*종신회원, E-mail:yslee@moak.chonbuk.ac.kr

방할 수 있고 크로스라이센스 등의 특허전략을 통해 안정적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출원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서가 공개공보의 형태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심사 청구 순서대로 심사관에 의해 심사된 후 하자가 없으면 특허를 받게 된다.

현재 특허를 받으려면 평균 약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터넷관련 특허의 경우 기술수명이 짧은점을 감안하여 금년 7월부터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해주고 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약 2개월만에 특허가능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약 15개월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영업방법에 관한 출원의 경우 약 70-80% 정도가 특허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출원서나 명세서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도 많지만 무엇보다 당해 출원서의 출원일보다 먼저 개발된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발된 기술을 서둘러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이미 다른 사람이 특허받은 것은 아닌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선행기술을 검색해 본 후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더 바람직하게는 기술개발 이전에 미리 특허정보를 검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터넷특허 대민 서비스 기능강화

최근 국내 인터넷 벤처 붐때문인지 올해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인터넷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심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심사관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4국에서는 컴퓨터과 내에 심사관 2인 1조의 인터넷특허도우미(Tel:042-481-5777, Fax:042-472-3473)를 설치하여 기업이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문과 요구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인터넷특허 전문 웹사이트인 신지식재산권연구회 NIP21(특허청홈페이지→관련사이트→NIP21 선택)를 통해 인터넷 특허 사례의 유형별 분석, 특허출원절차, 각종 기준에 대한 해설 등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을 나서며

“올바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정착이야말로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점차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국제적 추세와 대부분의 기본기술을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사이에서 최적의 정책적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야말로 우리 특허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정용철 국장은 설명했다.

에너지 절약 때문에 에어컨도 잘 틀어주지 않는 도서관같이 생긴 좁은 공간에서 매일 수십장에 달하는 출원서에 파묻혀 심사에 몰두하고 있는 심사관들. 그래도 모처럼만에 우리나라 기업이 출원한 우수한 출원서를 발견하고 특허를 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탐방을 마치고 특허청을 떠나 서울로 오는 길에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누르는 순간 우리나라 핸드폰 한대당 3만원 정도의 특허로얄티를 외국기업에 지불하고 있다는 심사관의 얘기가 떠올랐다.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세계속의 정보통신 특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